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21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2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유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61호)과 서울특별시장의 제안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39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최근 한강사업본부는 ‘건강한 한강’이라는 추진과제 아래 한강공원 내 야생생물 혹은 야생동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여러 장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나 야생 생·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없어 이를 현행 조례에 포함하고자 함.
- 또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등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현행 조례에 야생생물의 보호와 지원 근거를 제16조에 포함함(안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생태”를 “생태, 야생생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21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 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 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수질, 환경, 생태, 경관의 보전 및 개선</p> <p>3. ~ 6.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생태, 야생생물----- -----</p> <p>3.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부칙 < 제7121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 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 1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u>201</u> <u>9년 12월 31</u>까지 효력을 가진다.</p>	<p>부칙 < 제7121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 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u>2</u> <u>020년 12월 31일</u>-----.</p>